2008. 4. 7 .

수 신 : 제천시의회의장

제 목 : 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발의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1. 의안발의 서명서 1부.
2. 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1부. 끝.

발의자 : 유영화 의원 (서명또는날인)
외 3인

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의 안 발 의 서 명 서

劉永和	유영화	
김 명섭		
성 명 중		
김 병 용	김병용	

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의안번호	1253

발의연월일 : 2008. 4. 7.
발 의 자 : 유영화 의원외3인

1. 제안이유

제천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부실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예정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안 제2조)

○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전 또는 설계중에 해당 지역 주민,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토록 함(안 제4조)

○ 각종 공사시 당해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 · 감독하게 함(안 제6조)

○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사업부서의 장, 관할 읍·면·동장에게 시공 상황을 보고하게 함(안 제9조)

○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사전해소를 위한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토록 함(안 제11조)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표지판을 설치토록 의무화 함(안 제13조)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9.20 대통령령 제20283호]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붙임 1. 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1부.
2. 관련법규 1부. 끝.

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예정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책임감리 담당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해당 공사를 발주한 부서장의 책임하에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주민참여감독자"라 함은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도·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사람이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제4조(주민 설명회 개최) ① 시장은 3억원 이상의 공사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설계 전 또는 설계 중

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및 준공시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사시행의 통보) 시장은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서, 시방서 부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면·동의 지도·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사감독) ① 각종 공사 시행시 주관 부서의 장, 관할 읍·면·동장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주1회 이상 현장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 대상사업장이 다수인 경우에는 출장시기를 주관 부서의 장,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지도·감독시에는 공사에 대한 의견을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관리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각종공사 지도·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매몰부분 등의 점검) 감독공무원은 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직접 공사지도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 · 보존 하여야 한다.

제9조(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각종 공사 중 별표의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사업부서장, 관할 읍·면·동장에게 시공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출장 입회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독공무원은 제2항의 입회·확인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0조(예비준공검사실시) ① 시장은 공사비 10억원 이상 또는 공사 기간이 6월 이상 소요되는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1월 전 · 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며, 필요시 민간전문 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① 시장은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

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부서 및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의 해소, 공사의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록 · 관리한다.

④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시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해촉된다.

⑤ 주민참여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은「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부실시공 업체의 제재) ①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재는「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제13조(공사준공 표지판의 설치) 시장은 준공검사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시민이 보기 쉬운 장소

에 공사명, 시공업체, 사업량,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그 밖에 시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 준공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 ·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사 발주된 사업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별표】

현장 확인대상 주요 공정(제9조 관련)

공사종류	주 요 공 정
공통사항	시공측량, 기초처리공, 성토 및 다짐공, 지반조성공, 수목이식, 환경위해물질 발생공사시공, 기타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 설치
토목공사	철근가공, 조립, 배근, 콘크리트 타설공, 보조기층 및 포장공, 주요석축쌓기
건축공사	실내배관공, 철근가공.조립.배근.콘크리트 타설공, 마감 처리공, 조경공
기계.전기공사	기자재검사설비공, 배관설비공
조경공사	수목식재, 특수공법시행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工事)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외에 따로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감독범위·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책임감리 대상공사
2.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9.20 대통령령 제20283호]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에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지 방 자 치 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6. 5. 19 조례 제73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3억원 이하로 하되, 감독일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한다.

1.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상 · 하수도 설치공사

4. 가로 · 보안등설치 및 정비공사
5. 하천정비 및 개량공사
6. 마을회관, 복지관, 공중화장실 등 공공용 건축공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②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이하"여비조례"라 한다)를 준용하여 감독 1일당 일비(공무원 5급 상당)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히 현지 교통비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